명세서 작성 및 특허청구범위 해석

김 시 호 교수

메일: jurist4024@gmail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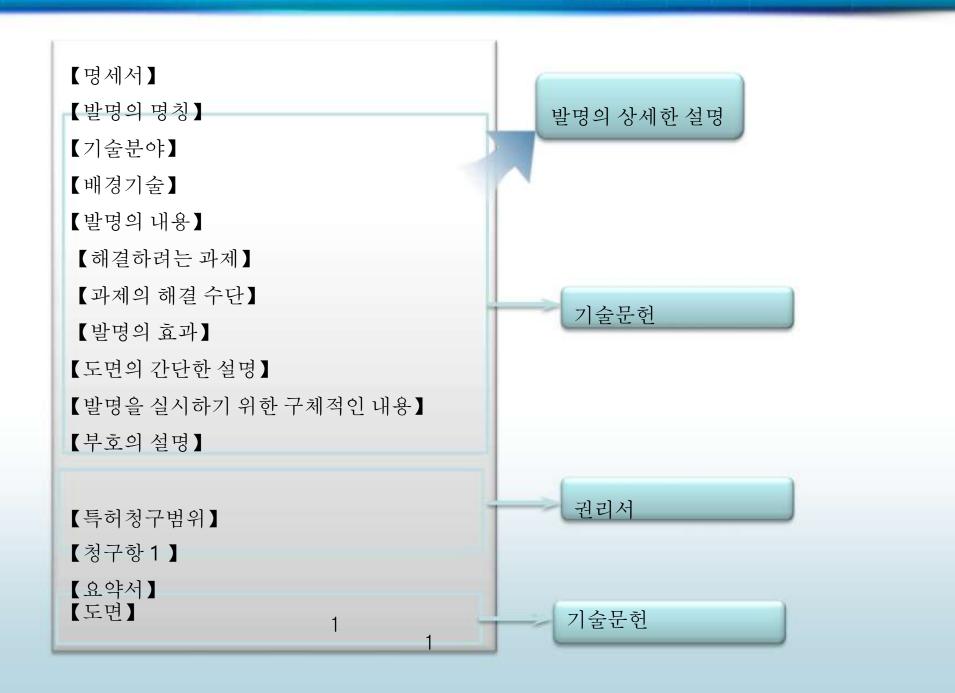
특허출원서

특허출원서란?

특허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권을 목적으로 국가에 내는 원서 즉, 발명에 대하여 특허의 부여를 요구하는 객관적 의사표시 문서



명세서의 구성 및 역할



명세서의 역할

'발명의 명칭' 서지 기능 '발명의 상세한 설명' 당해 발명의 해설서 기능 - 기술문헌으로의 역할

명세서의 구 성

'특허청구범위' 권리서 기능 심사 (심판) 대상의 특정

'도면의 간단한 설명' 도면 설명 기능

명세서의 작성 일반원칙

▶ 명세서의 기재 정도

- 당업자가 명세서를 보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(42(3)) 2007 년
 7월 1일 개정됨
 - 종전: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목적,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요구
 - 발명자에게 기재의 자유도를 주어 기재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제 3 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요건 완화
-①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,②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초하여,③출원시에 기술수준으로 보아,④투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,⑤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....(대법원 1999.02.23. 선고 97 후 1436 판결)

> 국어주의

- 국어로 기재된 출원서 기재자체에 의해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그러한 발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라 볼 수 없음 (대법원 1985.5.28 선고 84 후 43 판결)
- 외국어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원어를 병기할 것

발명의 명칭 작성요령

▶ 발명의 명칭

- 발명의 명칭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의 명칭기재
 - 발명의 명칭이 너무 구체적이면, 내 기술이 쉽게 검색될 수 있음
- 영문명칭은 {} 안에 기재
- 특허청구범위의 카테고리와 일치시킬 것
 - 2 이상의 카테고리 청구항은 복수의 카테고리 모두를 포함하는 간단명료한 명칭을 사용
- 극히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'특허'라는 용어는 사용 불가
- 보정에 의해 청구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도 이에 부합하도록 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
▶ 발명의 명칭의 예시 - 발명의 내용:자동제어장치

- 다양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경우 발명의 명칭의 예 : 자동제어장치
-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경우 발명의 명칭의 예 : 온 도제어장치

기술분야 작성요령

▶ 기술분야 (Field of invention)

- 본 발명은 *** 에 관한 것으로서 , 보다 구체적으로는 *** 에 관한 것이다
- 단순히 기술분야만 언급하며,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아님
- Incorporation: 출원번호의 인용으로 선출원된 명세서가 당해 출원 명세서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? 미국은 가능, 한국 및 일본은 일정 하지 않음. Ex) A Koran
 Patent Application No. 10-2007-****** is hereby incorporated by reference

배경기술[종래기술]작성요령

> 일반적인 작성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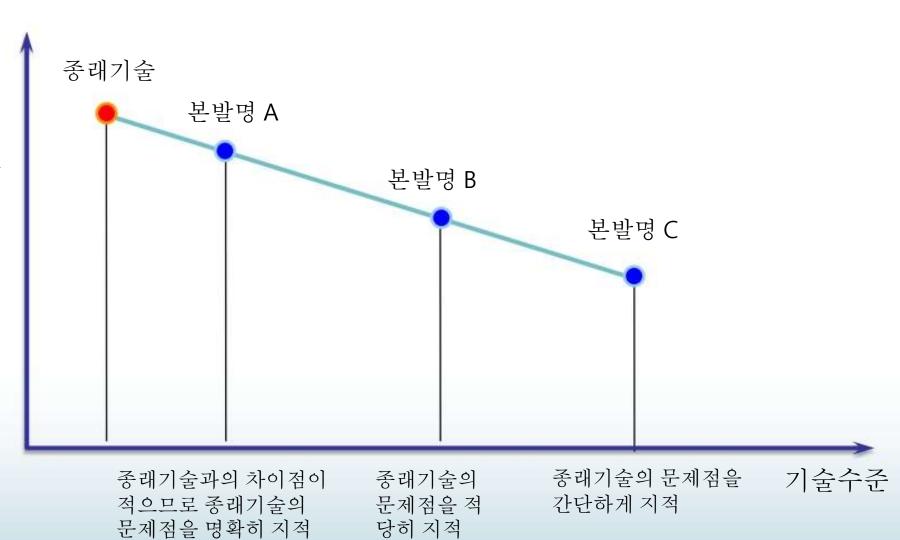
- 발명의 배경이 되는 종래기술에 대한 내용을 기재
- 배경기술의 구체적설명과 선행문헌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 (2011 년 7 월 1 일 이후출원부터)
 - 현재 알려진 종래기술 (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을 의미)을 가능하면 특허문헌, 학술문헌 등 문헌을 들어 설명
 - 출원시에 배경기술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선행문헌 정보를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
- 회사 내에서만 알려져 있고, 문헌이나 제품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술은 종래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(주의요망)
- 만일 실제 공개되지 않은 기술임에도 종래기술로 출원인 스스로가 인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인정한 종래 기술 (admitted prior art) 에 해당되어 불리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음. (대법원 2001 후 2757)
- 종래 기술에 기존의 자사 제품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, 제조물 책임법 (PL; Product Liability) 에 따라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음

> 종래기술의 기재수준 (trade off)

■ 등록가능성과 폭넓은 권리는 트레이드 오프관계 종래기술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진보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 종래기술을 자세히 기재하면 권리범위 해석이 좁아질 우려가 있음 본 발명의 기술 수준에 기초하여 종래기술 범위결정하는 것이 바람직

종래기술의 그래프

종래기술 의 문제점 설명 정도



해결하고자 하는 과제

- ▶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언급함
 - 목적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지 말고, 간단히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****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
 있다.
 - 예시) 본 발명은 카드의 분실 시에도 도용의 가능성이 없는 지문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 및 인증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
- ▶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(목적)를 많이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?
 - 침해주장(특히,균등론)시 불리할수 있음

과제해결수단

- ▶ 본 발명의 해결수단을 나타내는 것임
 -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수단 언급
 - 주로 청구항 (독립항)을 복사하는 형태로 작성
 -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적 수단을 기재 (장치,방법)
 - 기술적 수단은 채택한 기구, 수단, 방법, 공정,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을 연구,
 사용, 선택하였는가를 명확히 기재

발명의 효과

> 기재 내용

본 발명의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얻어지는 유리한 점, 새로운 효과, 특이한 효과,
 특유의 효과, 특징이 되는 점, 부가적인 효과

▶ 효과 기재시 주의 사항

- 추상적인 효과가 아닌 본 발명에 의하여 나타나는 기술적 효과를 기재할 것
- 발명의 목적에 기재된 사항을 충족하는 효과를 기재할 것
- 발명의 효과는 실시예의 설명 중에서도 언급하는 것이 좋음
 - 각 구성요건과 효과의 대응관계가 명확하게 되도록 기재할 것
- 구성의 차이가 미소할 경우 효과의 현저성에 따라 특허여부가 결정될 수
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효과까지 모두 기재

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

- ▶ 발명의 구성 및 작용의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
 -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개의 기술적 수단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
 - 발명의 구성인 기술적 수단의 역할 즉, 구성요소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
 - 기술적 수단이 공지기술에 추가된 경우, 공지의 부분과의 결합관계를 명확히 기재
 - 각 구성요소별로 구조, 기능 및 각 요소간의 결합관계 등을 순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
 - 구성요소가 수치인 경우 범위를 특정하고 수치한정의 이유를 논리적으로나 실험 Data 에 의하여 뒷받침되도록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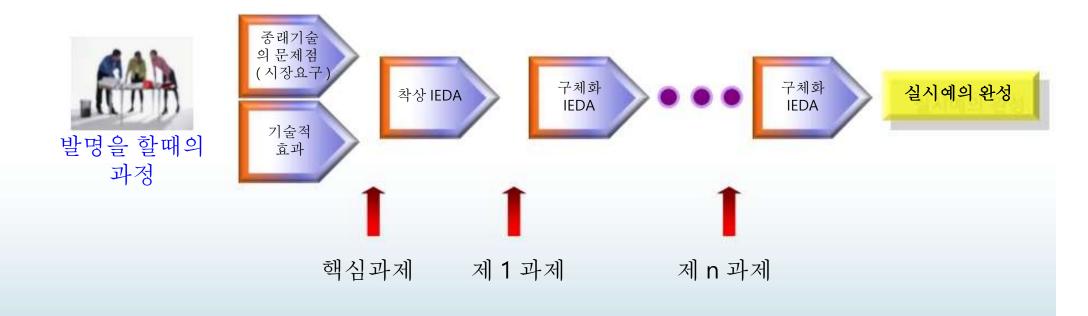
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[2]

> 실시예

- 변형예를 포함해서 가능한 다른 실시형태가 있으면 모두 기재한다.
- 실시예가 다양하면 침해시 용이하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.
- 상세히 기술하면, 불필요한 의견서 통지이유를 회피할 수 있다.
- 상세히 기술하면, 선행기술에 의한 의견서 제출시 구성요소를 더욱 감축하여 거절사정을 방지할 수 있다.
- 실시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권리범위로 청구할 수 없다.
- 비교예는 본 실시예와 가장 가까운 예를 선택한다.
- 실험 Data 중 특성 측정값은 그 측정값을 구한 공식 또는 실험조건을 설명한다.
- 미국의 경우 means plus function claim 은 실시예를 기초로 권리범위 해석

Problem Solution

Problem-Solution Approach



발명신고서 작성요령[1]

> 기본원칙

- ✓ 가능하면 쉽게 기술할 것
- ✔ 일반적인 기술용어를 사용하고, 사내 용어 사용 (필요한 경우 정의를 내릴 것)은 금지
- ✔ 한번 사용한 용어는 계속 같은 용어만 사용하고 비슷한 용어사용은 금지
- ✔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가 포함되어야 하며, 너무 장황하게 기재하지 말 것
- ✔ 권리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자제할 것

▶ 발명신고서 작성 프로세스

종래 기술의 문제점 기재 진보성을 인정받을 만한 발명의 논리개발 (기본 아이디어)

발명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구 체적인 내용설명 (실시예 기재)

보호받고자 하는 아 이디어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

발명신고서 작성요령 [2]



종래기술

발명의 논리 개발



실시예의기재

- 🍍 종래기술의 설명정도 (구체성 정도) 결정
- 🍍 제안발명과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 기재
- 종래기술은 가능하면 문헌번호로 간략히 기재
- *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헌은 절대 종래기★ 가능한 여러가 술로 언급하지 말 것 (특히, 미공개 출원 아이디어 도출 건의 경우 주의요망)
- 발명의 공개예정(논문공개, 판매 예정 등)은 반드시 언급

- 최초 착상 아이디어에 가장 가까 운 종래기술 검색
- 검색된 종 래기 술로 부 터 진 보성을 인정받을 만한 가장 넓은개념의 아이디어 도출
- ◆ 가능한 여러가지 관점에서 발명! 아이디어 도출

-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생 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실시예 를 기재
- 도면과 함께 실시예는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

발명의 논리개발[1]

- > 진보성이 인정되도록 종래기술과 차별화 (발명의 논리가 무엇인가)
 - ✓ 사례 1- 휴대폰에 MP3 플레이어 기능을 구현
 - ✔ 진보성이 인정될 정도로 종래 기술과 차별화 (구체적인 아이디어 도출)
 - ✔ 휴대폰에 MP3 플레이어를 최초로 결합시켰다는 정도로는 진보성 극 복이 어려움
 - ✔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?
 - ✓ 새로운 기능?
 - ✓ 결합시 해결해야 할 사항?
 - ✔ 제 2 단계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기술을 설명
 - ✓ 플로 챠트를 이용해서 신호 흐름 설명

연구노트 작성전략

● 발명신고서에 발명의 완성과정 기록

- 발명신고서에 발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이 잘 기재되어 있다면, 변리사는 발명이 완성될 때까지 제기된 과제들과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(아이디어)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,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음.
- 그러나, 대부분의 경우 발명자가 기재한 발명신고서에는 발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, 최초 핵심과제와 최종 완성된 기술이 실시예 의 형태로만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임

연구노트 기재방법

- 발명완성과정이 연구노트에 기재되어야 함
 - 연구노트 작성 단계에서 어떤 과제 (problem) 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(solution) 을 단계별로 기재해야 함
- 발명 완성 과정을 나중에 참조하기 쉽게 연구노트에 표기해야 함

연구노트 작성 체크리스트[1]

- 발명신고서 (특허명세서)에 기재될 부분의 체크리스트
 - 연구노트에는 발명신고서나 명세서 작성시 참조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, 반 복적인 실험이나 단순한 연구진행과 같이 발명신고서의 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도 많음.
 -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을 연구노트에 표기할 것

구체적인체크리스트	명세서또는발명신고서활용방안
연구배경이나종래기술의문제점이기재되어있나?	배경기술(종래기술)로기재되는부분임
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착상아이디어(concept)또는 개념적인아이디어인가?	가장넓은권리범위에해당됨
실제로구현가능한솔루션인가?	명세서의실시가능요건을만족하는내용임
추가적인기술적인문제점이있나?	추가실시예와관련됨
추가기술과제에대한솔루션인가?	구체적인실시예임
과제해결에최적인솔루션또는데이터인가?	최적의실시예임
일부문제해결은가능하지만,다른문제점이존재하는솔루션 또는데이터인가?	변형가능한다양한실시예에해당함
실험적인효과또는논리적인효과가있는가?	발명의효과로기재되는내용임

연구노트 작성 체크리스트 [2]

- 강한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노트 보완사항 체크리스트
 - 강한 특허 (돈 되는 특허)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) 제품적용가능성이 있고, 2) 유효한 특허로서, 3) 권리범위가 넓으며, 4) 침해입증이 가능해야 함
 -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을 연구노트에 표기할 것

구체적인체크리스트	명세서또는발명신고서활용방안
이론적배경이되는문헌명(문헌번호)이나,종래기술에 해당하는문헌명(문헌번호)가있는가?	문헌명이있는경우에만종래기술로언급하는것이 바람직함
연구노트의솔루션이직접적으로입증이가능한기술인가?	입증이어려운기술은특허출원보다는노하우로 보호하는것이바람직함
간접적으로입증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?	간접적인입증방법을반드시명세서에언급해야함
간접입증방법에대한추가실험또는데이터가있는가?	간접적인입증방법을반드시명세서에언급해야함
제안솔루션과유사한선행문헌(특허나논문)을검색한적이 있는가?	유사한선행기술이발견되는경우발명의논리를바꿀 필요가있음
선행문헌대비차이점이있는구성과이에따른효과의차이가 있는가?	종래기술대비신규성구성및신규한구성에의한 효과의차이를강조해야진보성을인정받을수있음

연구노트 작성 체크리스트 [3]

● 전자 / 기계 분야 추가 체크리스트

- 전자 분야는 알고리즘에 특징이 있는 경우 입증 가능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, 기계 분야는 기구적인 구조에 특징이 있는 경우 수치 최적화보다는 기구적인 구성에 특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함
-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을 연구노트에 표기할 것

구체적인체크리스트	명세서또는발명신고서활 용 방안
알고리즘에주요특징이있는가?	알고리즘뿐만아니라시스템기능블록도,각 기능블록도사이의플로차트등도발명신고서에 기재해야함
알고리즘을추청할만한UI나기능이있는가?	입증이가능한UI나기능/동작을 발명신고서/명세서에기재해야함
파라미터값의최적화에특징이있는경우,임계적 효과가입증되는파라미터에대한실험데이터가있나?	진보성이인정되기위해서는파라미터범위에 대한임계적효과가필요함
기구의구조에대한파라미터값의최적화에특징이 있는경우,둘이상값의비율인상대적파라미터로 실험데이터가기재되어있는가?	파라미터는절대적인값에특징이있는 파라미터와둘이상의값의비율에특징이있는 상대적파라미터로분류할수있으며,이중 상대적인파라미터가절대적파라미터보다넓은 권리범위로인정됨

감사합니다.